

심사보고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
----------	----

2018. 12. 14.(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2월 04일

-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충청권 행정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지방자치회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획단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중앙부처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을 변경 및 폐지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4개 시·도가 합의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 및 상생협력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및 제2조)

- 목적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복잡한 목적 조항을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목적과 설치,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충청권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조직(안 제3조 및 제4조)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시·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운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함.

○ 실무협의회 및 경비부담(안 제13조 및 제14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규약개정 등(안 제15조)

-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지난 11월8일 공동으로 협의·작성한 본 개정안에 대해 절차상 고시 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음.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설치)는, 총칙에 해당하는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인 충청권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약 제1조를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한 것임.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를 말하며, 이하 “구성단체”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 현행 규약 제2조(사무소의 위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의·결정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사무소가 2019년 7월,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에 지속 입주하게 된 바,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삭제함.

현 행	개정안
제2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내에 둔다.	(삭 제)

※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은 2013년 12월12일 충청권 시·도지사 협의로 충청권 행정협회의 사무국 역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윤번제 방식에 따라 2016년(충남), 2017년(대전), 2018년(세종)에 둠.

-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을 안 제4조는 협의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의방법을,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등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항 배열 및 일부 조 제목, 문구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현행 규약과 내용상 차이는 없음.
- 안 제8조는 간사의 직위를 현행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에서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에서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한 것은, 향후 직위명칭의 변경에 따른 규약 개정의 필요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권행정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권 4개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없는 사무소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충청권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 일반현황

- 설립 : '95. 3. 3.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
- 설립목적 :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 조직 : 협의회(시·도지사), 실무협의회(기획관리실장)
- 운영 : 회장 시·도 (직제순에 의한 윤번제)
 - ※ 충북('15) → 충남('16) → 대전('17) → 세종('18) → 충북('19)
- 주요업무 : 충청권 광역행정 발전 및 개발사업 등 공동협력 대응 등
 - ※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 충청권 상생협력기구 설치·운영 합의('13.12.12)

□ 2017년 ~ 2018년 추진현황

- '17년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실무협의회 : 3회 개최
 - '17년 기획단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안, 공동용역 추진(2건) 보고 등
 - * 충청권 근대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충청선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 '17. 9. 14. 제26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 : 공동합의문 의결

- | | |
|------------------------------|---------------------------|
| ① 대덕특구 ~ 세종시(연서면) 일원 광역도로 건설 | 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
| ②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건설 | ⑥ 세종역~청주국제공항 BRT 도로 건설 |
|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 ⑦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
| ④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⑧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

- '18년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실무협의회 : 3회 개최
 - '18년 기획단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안, 공동용역 추진(1건) 보고 등
 - * 충청권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 '18. 11. 22. 제27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

- | |
|---|
| ①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 시·도민 의견 취합 |
| ②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 |
| ③ 지역인재 채용 관련 혁신도시법 개정예 공동협력 권역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 ③ 민선7기 충청권 공동공약 시행계획 마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91
----------	----

제출연월일 2018. 11. 21.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 사유

- 충청권 행정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지방자치회관 입주시기에 맞추어 기획단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중앙부처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을 변경 및 폐지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4개 시·도가 합의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 및 상생협력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및 제2조)

- 목적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복잡한 목적 조항을 법령입

안심사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목적과 설치,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충청권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나.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조직(안 제3조 및 제4조)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시·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함.

다. 실무협의회 및 경비부담(안 제13조 및 제14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규약개정 등(안 제15조)

-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3. 규약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련법규 발췌 : 별첨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를 말하며, 이하 “구성단체”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 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로 하고, 회장은 시·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 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안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구성단체의 실·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미흡한 사항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국장과 협의안건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규약개정 등)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6조(규약개정 등)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